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5호

주민 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4월 13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1. 청구 조례명 :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

2. 청구인의 대표자

○ 성 명 : 김선호

○ 주 소 :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중앙길 15-2
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: 2022. 04. 13

4. 서명요청기간 : 2022. 4. 14.~ 2022. 7. 28.

○ 제외기간 :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(2022. 5. 19. ~ 2022. 6. 1)

5. 청구권자수 : 1,150명 이상(18세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/50이상)

※ 고흥군 공고 제2022-44호(고흥군 조례의 제정·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포)

6. 조례 제정 청구취지

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지역 내 면허지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

7. 주요내용

○ 행정구역 변경의 대상이 되는 섬을 특정 및 취지 규정

○ 지역주민과 양식업자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장

8. 전자서명절차 안내

○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 주소 : 주민e직접 https://juminegov.go.kr

○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

① 포털사이트	→	② 서명하기 선택	→	③ 조례안 선택	→	④ 온라인 서명
검색창에 **'주민e직접'** 검색		-**주민조례안보러가기** -**'자치단체'** 선택·검색		제안이유, 주요내용 등 **확인**		본인 확인 후 **'서명하기'**

○ 전자서명 취소 방법

- ① ~③번 과정 동일 → ④번 과정에서 '서명취소' 버튼 선택

9. 기타 행정사항

○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흥군 의회사무과 의사팀(전화 061-830-606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